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을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나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다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

우, 영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해당 품목의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2. 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계획 수입량에 대해 제1항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4. <삭    재, 2010.11. >

